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립자연휴양림 내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에 대해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층수에 관계없이 조성 가능하게 하여 건축 비용 절감 및 탄력적인 식당 운영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·기준 등 보완(안 제7조제2항제3호)
 - 사립자연휴양림의 경우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면적은 현행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3층까지 총 6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나, 단층의 6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
- * (현행) 바닥면적 $200\text{m}^2 \times 3\text{층} = 600\text{m}^2 \rightarrow$ (개정) 단층의 600m^2 도 가능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중 “연면적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말한다)은 200제곱미터”를 “연면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, 그 외의 자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600제곱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· 기준 등) ① (생략)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<u>연면적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말한다)</u>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 4. (생략) ③ 삭제 ④ (생략)	제7조(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·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연면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, 그 외의 자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u> 4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11